

## 교내연구비 관리세칙

2003. 10. 10. 제정

2016. 5. 13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연구비관리 규정」 제21조에 의거하여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교내연구비(이하 “교내연구비”라 한다)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11.7.>

제2조(신청자격 및 대상) 교내연구비는 본교의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, 동일한 연구과제로 교내외의 다른 연구비 지원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교원은 교내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.

1. 연구논문
2. 예술발표회(연주회, 공연, 전시회 등)
3. 연구보고서

제3조(연구기간)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9.8.31., 2016.5.13.>

제4조(신청절차 등) ① 교내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내연구비 지원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내의 유관 기관장을 거쳐 연구처 연구진흥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5.13.>

- ② 교내연구비 지원과제 신청에 따른 서식 및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연구과제의 선정) 총장은 학술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를 선정한다. 다만, 각 기관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과제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13.>

제5조의2(연구비 집행) 연구비 비목 및 집행 관련 사항은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. [본조신설 2007.11.7.]

제6조(연구계획의 변경)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제목, 연구기간, 실행예산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,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만료 전에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6.5.13.>

- ② 삭제 <2009.8.31.>

제7조(연구결과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8.31., 2016.5.13.>

- ② 연주회, 공연, 전시회 등의 예술발표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

## 교내연구비 관리세칙

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학술발표회 프로그램 또는 팸플릿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8.31., 2016.5.13.>

③ 연구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최종연구결과를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본교가 별도로 정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고 별쇄본을 최종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8.31.>

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연구결과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내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.

⑤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까지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.

⑥ 연구결과로 게재 또는 발표된 결과물의 제목 기타의 내용은 연구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에 “이 연구는 ○○○○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(영문 :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○○○○)”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기간연장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또는 제7조제2항의 최종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제7조제3항의 별쇄본 제출기한 종료일 전일까지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 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13.>

② 연장되는 기간 또는 기한은 전항의 기간 및 기한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09.8.31.]

제8조(연구중단시의 보고)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에 사고,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연구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구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임규정) 교내연구비의 관리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2003. 10. 10. 제정>

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11. 7. 개정>

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8. 3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.

부칙 <2016. 5. 13. 개정>

이 세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